

제92차 이사회 회의록

사 회 복 지 법 인 금 강



제92차 이 사 회 회 의 록

1. 일 시 : 2024년 10월 18일 (금) 16:00

2. 장 소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지혜실

3. 이사회 사전통보일시 및 방법

2024년10월10일 / 이사회 개최 공문 팩스 및 문자발송

4. 참 석 자 : 대표이사 : 이재경(원행스님)

이 사 : 여무의(원택스님), 신의수(원타스님), 김윤현(원여스님),

장준철(원당스님), 정영건, 박인철

(총 이사수 : 9명 / 참석이사수 : 7명)

5.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 조문 변경 심의 : 원안대로 의결

■법인 정관 전수 점검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정관 별지 변경

2) 제2호 의안

- 법인 임원(감사,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 : 원안대로 의결

■법인 임원(감사, 이사) 선임

6. 성원보고 : 대표이사 이재경이 정관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 조문 변경 심의

(법인 정관 전수 점검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정관 별지 변경)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부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조문 변경에 따른 심의입니다.
사무국에서 제1호 의안에 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 사무국에서 법인정관변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고함.

접수공문 창원시 아동청소년과-14662호(2024.04.24.)와 관련 사회복지법인 정관 전수 점검에 따른 정관 조문 변경 및 별지목록 수정을 진행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대비표를 설명함.

변경 전 정관 조문	변경 후 정관 조문	변경사유
제 1 장 총 칙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③『노인복지법 제38조』<u>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운영</u> ④『노인복지법 제39조의5』<u>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u> ⑤『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u>노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u> ⑥『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u>시니어클럽 외 노인일자리 관련사업 운영</u> ⑦『노인복지법 제39조의19』<u>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u> ⑧ 그 밖의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1 장 총 칙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③『노인복지법 제39조의5』<u>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u> ④『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u>노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u> ⑤『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u>시니어클럽 외 노인일자리 관련사업 운영</u> ⑥『노인복지법 제39조의19』<u>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u> ⑦그 밖의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③항목적사업 삭제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미운영으로 인한 삭제 ④항→③항 변경 ⑤항→④항 변경 ⑥항→⑤항 변경 ⑦항→⑥항 변경 ⑧항→⑦항 변경 ⑧항 삭제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관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u>1월말까지</u> 전년도 of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그 밖의 관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u>3월말까지</u> 전년도 of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항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조문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변경 / 「허가」 조문을 「사전허가」로 내용변경 ③항 「1월말까지」조문을 「3월말까지」로 내용변경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2 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u>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u> 수익사업에 속하는 <u>수입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u>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2 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u>법인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u>, 수익사업에 속하는 <u>수입회계</u>로 구분한다.)	제8조(회계의 구분 등) 「법인 일반회계와」 조문을 「법인회계와」 변경/ 「수입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조문을 「수입회계로 구분한다.」로 내용변경 ②항 삭제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 처리는 <u>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u> 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 <u>사회복지사업법</u> 」 및 <u>관련 법령</u> 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회계의 처리) 「 <u>사회복지사업법</u> 및 <u>관계법규</u> 」 조문을 「「 <u>사회복지사업법</u> 」 및 <u>관련 법령</u> 」으로 <u>내용변경</u>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u>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u> 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u>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u> 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기부금」 조문을 「기금」으로 <u>내용변경</u>
제 3 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u>사회복지사업법</u>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19조 각호의 <u>하나</u> 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 <u>사회복지사업법</u> 」 조문을 「「 <u>사회복지사업법</u> 」」으로, 「1」 조문을 「하나」로 <u>내용변경</u>
제21조(임원의 직무) ② <u>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u>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④ <u>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u>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21조(임원의 직무) ② <u>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③ <u>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④ <u>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u>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u>사항을</u> 감사하는 일 6. <u>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u>	제21조(임원의 직무) ②항 조문삭제 ③항→②항 변경 ④항→③항 변경 ⑤항→④항 변경 ④항 2. 「 <u>상황</u> 」 조문을 「 <u>사항</u> 」으로 <u>내용변경</u> ④항 6. 「 <u>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u> 」 조문 신설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의결사항) 이사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정관의 <u>변경 사항</u> .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의결사항) 이사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정관의 <u>변경에 관한 사항</u> .	제26조(의결사항) 「결의」 조문을 「 <u>의결</u> 」로 <u>내용변경</u> 1. 「 <u>변경 사항</u> 」 조문을 「 <u>변경에 관한 사항</u> 」으로 <u>내용변경</u>



제27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③ 이사회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③ 이사회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③항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조문을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으로 내용변경
제30조(이사회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임원 전원(의장 포함)과 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록) ②항 「기록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날인하여야 한다.」 조문을 「기재하고, 참석임원 전원(의장포함)과 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로 내용변경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사업마다 이 사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 2. 간행물발행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항 「사회복지사업법」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조문을 「각 사업마다 이사회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1. 부동산임대업 2. 간행물발행사업을 신설

이상 정관 조문 변경이며, 별지 2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 이사는 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제52조)으로 법인정관 별지 2 내용은 현 이사명단이 아닌 설립 당시 임원을 기재하여야 함. 이는 설립당시 임원은 특별한 관계의 자 확인용임.(법 제18조 제3항,령 제9조)

변경전 정관 별지 2

별지 2

임원명단

순번	직위	임 기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1	대표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이재경	남	1948.08.20	창원시 마산회원구양덕천길 118
2	상임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신의수	남	1957.01.17	합천군 가야면 청량동길 144
3	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여무의	남	1944.10.02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4	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김윤현	남	1956.01.12	부산시 북구 낙동북로684(구포동)
5	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장준철	남	1956.05.24	대구시 남구 현충로3길 56(대명동)
6	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곽인철	남	1966.12.25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33, 124동 1901호(마린에시앙 부영)
7	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오정옥	여	1960.09.15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320, 1502호(대원동,더시티세븐팔라조)
8	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조영순	여	1968.11.06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36번길 21-6
9	이사	2023.10.20. ~ 2026.10.19. (3년)	주용수	남	1974.12.15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25, 114동 605호 (장천동,대동다숲아파트)
10	이사	2021.11.20 ~ 2024.11.19. (3년)	정영건	남	1957.07.27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37번길 18, 105동 304호(성주동,루이제하우스)
11	감사	2022.11.01 ~ 2024.10.31. (2년)	김을섭	남	1964.11.19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 94번길 19, 자이동 103동 1901호(대원동)
12	감사	2022.11.01 ~ 2024.10.31. (2년)	노경숙	여	1959.03.10	창원시 마산합포구월영6길 39,102동 302호(해운동,두산아파트)

변경후 정관 별지 2

별지 2

설립시 임원명단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이사	1996.10.20. ~ 1999.10.19. (3년)	이 재 경	1948.08.20.	마산시 양덕1동 41-2
이 사	1996.10.20. ~ 1999.10.19. (3년)	여 무 의	1944.10.02.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이 사	1996.10.20. ~ 1999.10.19. (3년)	신 의 수	1957.01.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이 사	1996.10.20. ~ 1999.10.19. (3년)	김 병 옥	1941.01.15.	창원시 중앙동 115
이 사	1996.10.20. ~ 1999.10.19. (3년)	신 선 이	1933.11.18.	마산시 신흥동 6-36
이 사	1996.10.20. ~ 1999.10.19. (3년)	양 종 학	1946.03.21.	마산시 양덕1동 832-1
감 사	1996.10.20. ~ 1998.10.19. (2년)	송 명 연	1940.11.29.	마산시 오동동 159-10
감 사	1996.10.20. ~ 1998.10.19. (2년)	백 명 자	1945.04.03.	마산시 회원2동 대림파크 5동 408호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사무국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호 의안에 관하여 첨부자료를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사무국에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법인정관 조문 내용변경에 관하여 전반적인 부분은 정관 표준(안)에 맞춰 잘 정리된거 같습니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③항 삭제에 관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법인이 금강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그 이후 대표이사님께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운영하려고 하셨으나 노년시설 추가 신설과 노인복지관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법인자원의 어려운 현실에 더 이상 사업추가를 하는것 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하시설에 집중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관조문 변경 시 마무리하고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광인철

제일 처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합포구 내 지역조사를 직접하였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2005년 4월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실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이 도입되면서 우리 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존의 재가복지시설로써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용자 감소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7년 4월까지 운영하고 이후 종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표이사님과 여러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맞춤형돌봄시설 및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이후 재가노인복지 환경변화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관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더 이상 사업의 추가 운영이 어려울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타스님 (신의수)

저도 사무국의 설명과 자료, 그리고 이사님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법인정관 조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에 집중하고 차후 상황을 보고 신규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 조문은 사무국의 설명대로 변경하고 별지



2 임원명단도 설립당시임원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른 이사님들은 의견이 없으신지요? 그럼 1호 의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동의와 재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원타스님 (신의수), 원여스님 (김윤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정영건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그럼 제1호 의안에 법인정관조문 변경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제1장 총칙 제4조(사업의 종류) ③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운영 삭제 및 ④~⑧항 변경, 제6조 ①항, ③항 내용변경,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2절 회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①항 내용변경, ②항 삭제, 제9조(회계의 처리), 제13조(잉여금의 처리) 내용변경, 제3장 임원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내용변경, 제21조(임원의 직무) ②항 내용삭제 및 ③~⑤항 변경 및 내용변경, 제4장 이사회 제26조(의결사항) 내용변경, 제27조(이사회 소집 등) ③항,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②항 내용변경,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 ①항 내용변경 및 신설, 별지2 임원명단을 설립시 임원명단으로 변경에 관한 안건이고,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원당스님, 정영건 이사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조문 변경 심의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제2호 의안 : 법인 임원(감사,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

(법인 임원(감사,이사) 선임)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제2호 의안입니다. 법인 임원(감사,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 사무국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 사무국에서 법인 임원(감사,이사)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함.

감사 2분의 임기가 2024년10월31일까지 만료됨. 이사회 전 먼저 두 분께 연임 의사를 여쭙본 결과 김을섭 감사님은 연임을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고, 노경숙 감사님은 이번까지만 하시기로 함. 이사님의 임기는 2024년11월19일까지임.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네. 우선 감사 선임 관련입니다. 감사 두분은 다른 일정으로 오늘 회의 불참이라 먼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김을섭 감사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연임 해주시기로 하셨고, 노경숙 감사님은 이번까지 감사직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사님들의 의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타스님 (신의수)

네. 2년 동안 우리 법인을 위해 고생해 주신 두 분의 감사님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을섭 감사님께서 연임해주시겠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 부분에서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김을섭 감사님처럼 전문가가 우리와 계속 함께해주시니 든든합니다. 노경숙 감사님도 그동안 법인을 위해 노력해주셨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니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인사 신도회장으로 계신 김명희 님을 감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법의 지원사찰로 회장님이 감사직을 맡는게 좋다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저도 원타스님과 마찬가지로 김명희 님을 감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법인 감사직도 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광인철

김을섭 감사님은 우리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자문과 지지를 해주셨는데 다시 감사직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경숙 감사님은 그동안 감사직 임무를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원타스님께서 추천해주신 김명희 님은 그동안 저도 보아왔지만 우리 법인 및 산하시설에 관

하여 잘 알고 계시기에 감사직을 맡으시면 잘하시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네.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럼 김을섭 감사님의 연임과 김명희 님의 감사 선임에 관하여 이사님들의 동의와 재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타스님 (신의수), 원당스님 (장준철), 광인철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정영건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네. 다음은 이사 선임입니다. 이사님들의 의견과 이 자리에 정영건 이사님의 의견 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정영건 이사님은 우리와 함께한지 오래되었고 언제나 법인을 위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법인과 함께하심은 어떠한지요? 라고 말하다.

이 사 : 정영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님을 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분들이 든든하게 옆에 계시니 좋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건 이사님의 동의로 연임에 관하여 이사님들의 동의와 재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원여스님 (김윤현), 광인철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원타스님 (신의수)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그럼 제2호 의안 법인 임원(감사,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 건에 관하여 감사에는 김을섭 감사님의 연임과 김명희님의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원타스님, 원당스님, 광인철 이사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원택스님, 정영건 이사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영건 이사님의 연임은 원당스님, 원여스님, 광인철 이사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원택스님, 원타스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호 의안에 법인 임원(감사,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는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금강 제92차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다.

8. 폐회선언 : 2024년 10월 18일 18:00 폐회.

2024년 10월 18일

사 회 복 지 법 인 금 강

참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 하다

대표이사 : 이 재 경



이 사 : 여 무 의



이 사 : 신 의 수



이 사 : 김 윤 현



이 사 : 장 준 철



이 사 : 정 영 건



이 사 : 곽 인 철



감 사 : 김 을 섭



감 사 : 노 경 숙



사 회 복 지 법 인 금 강

수 신 수신처 참고

(경유)

제 목 2024년 제92차 이사회 실시에 관한 안내 건

사회복지법인 금강 2024년 제92차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일 자 : 2024년10월18일(금) 16:00
2. 장 소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A동 2층 지혜실
3. 부의안건
 - 1)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 조문 변경 심의
 - 법인 정관 전수 점검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정관 별지 변경
 - 2) 제2호 의안
 - 법인 임원(감사,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
 - 법인 임원(감사, 이사) 선임. 끝.

사 회 복 지 법 인 금 강 대 표 이 사

수신처 :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오정옥이사님, 박인철이사님, 정영건이사님,
조영순이사님, 주용수이사님, 김을섭감사님, 노경숙감사님

기안자 안정숙 

대표이사 원행 

협조자

시행 금강 100-17호 (2024. 10. 10) 접수

우 5176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번지 (금강노인종합복지관) /

전화 055)221-8445-6 전송 055)221-8447 / gk8445@naver.com / 공개

